

# 갈수대책업무규정의 소개

이 봉 희\*

## □ 제정 취지

과거에는 물수요량에 비해 공급능력이 여유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댐적지의 감소, 개발단가의 상승 등으로 신규 수자원개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미 개발된 물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기존 물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하천에 대한 상시 물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물관리를 적절히 할 경우 10% 공급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같이 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 물관리에 대한 기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수이용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갈수발생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우기, 하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도 하천의 수질악화등으로 점차 증가가 요구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간 수리권분쟁이 심각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평상시 하천수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갈수시 하천수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립하기 위해 갈수대책업무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 □ 주요 내용

가. 주요지점에서의 하천유량, 水系別 取水상황 및 댐貯水상황을 파악하는 등 하천유황을 감시

- 나. 一定量이상의 河川水 占用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실제 사용량 등을 제출
- 다. 하천의 갈수상황 기준을 정하여 각 하천수 사용기관에 통보하고 갈수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 라. 갈수시 水利權조정 및 합리적인 河川水 사용을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댐관리자, 수질 관리기관 및 하천수 사용대표자로 구성된 갈수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
- 마. 수질관리업무통합지침(총리훈령)의 규정에 의한 수계안의 유황분석 및 댐방류계획등 갈수시 수질관리대책

## □ 추진 계획

갈수대책업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하천관리자는 수계별로 기준지점을 정하고 하천유지유량과 관리유량을 설정함과 동시에 각종 수문자료의 실시간 수집을 위해 해당 홍수통제소, 댐관리사무소등과의 PC로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 관리청별로 갈수대책본부운영규정 및 갈수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을 작성할 계획이다.

## 갈수대책업무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 6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갈수시 이에 대한 제반

\*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토목사무관

대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수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하천유지유량”이라 함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에 흘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② “하천관리유량”이라 함은 하천유지유량에 하류지점에서의 유수점용을 위해 필요한 이수(利水)량을 더한 유량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③ “댐 등 설치자”라 함은 하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 등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하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하 “직할하천”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4 조(업무수행등)** ① 갈수대책업무는 하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천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하천의 수량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홍수통제소장 또는 댐설치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기준지점 및 유량)**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효율적인 하천의 수량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의 유황(流況)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기준지점에서의 하천 유지유량과 하천관리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유지유량과 하천관리유량을 정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하천유황의 감시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하천의 유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준지점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하천유량과 관할하천내에서의 취수상황 및 댐저수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갈수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두어야 한다.

1. 과거의 강우, 수위 및 유량변동에 관한 통계자료
2. 용도별, 기간별 하천수사용 양상(樣相) 및 실태
3. 갈수시의 강우량과 유출량과의 관계
4. 수계내 각 댐의 저수현황 및 공급가능량
5. 기타 갈수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7 조(하천수사용실태의 보고)**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하천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하천수 사용자(댐 등에 의해 저류된 물을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간 실제 취수량 또는 배수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용수 : 2,500m<sup>3</sup>/일 이상
2. 공업용수 : 1,200m<sup>3</sup>/일 이상
3. 농업용수 : 2m<sup>3</sup>/초 이상 또는 관개면적 600ha 이상
4. 기타용수 : 2,500m<sup>3</sup>/일 이상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하천의 수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직할하천에 유입되는 지방하천 또는 준용하천에서의 하천수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갈수상황)**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자료와 기상예보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하천수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갈수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량이 상당기간 하천관리유량이하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가된 유수점용량의 사용이 극히 곤란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갈수상황의 전달)**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갈수상황을 관할구역내 하천 수사용 관계기관과 댐 등 설치자 및 수질관리업무통합지침(국무총리훈령 제296호)에 의한 수계별 수질관리 대표행정기관의 장(이하 “수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등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갈수대책본부의 설치)**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갈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갈수대책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지방국토관리청에 갈수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당해수계의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본부를 설치하거나, 갈수상황이 종료되어 본부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본부의 업무)**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 및 유역수문상황의 파악
2. 유황예측
3. 하천수 사용자의 취수 및 배수실태 파악
4. 댐저수상황 파악 및 댐방류조정 협의
5. 갈수 상황 파악
6. 갈수조정협의회등의 개최 등
7.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조
8. 기타 갈수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 12조(갈수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갈수시 하천수 사용자간의 원활한 수리권 조정과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수계별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설치한다. 다만, 협의회의 개최사유 또는 협의할 내용이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제 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의장으로 하며, 댐 등 설치자, 지방자치단체

의 장, 수질관리기관의 장, 하천수 사용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소집, 협의내용 정리 및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수리권의 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합리적인 하천수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갈수시 업무협조 및 연락체계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갈수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 15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하천수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하천법 제29조에 의하여 수리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간에 수리권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각 하천수 사용자가 상대방의 수리권을 존중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재의 하천유황, 댐저수상황등을 고려하여 갈수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원,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기타 협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조(취수제한의 보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갈수상황이 심각하여 하천수의 취수제한을 실시할 때(제한내용을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갈수기수질관리대책의 수립)** 수질관리업무통합지침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국토관리청장이 담당하여야 할 갈수기수질 관리대책중 수계내의 유황분석 및 댐 방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계내의 월별 강우
2. 기준지점의 연도별 월평균 유량(최근 10년이상)
3. 기준지점의 유황곡선(갈수량,저수량,평수량

및 풍수량)

4. 각 댐의 연도별 월평균 유입량 및 방류량(최근 10년이상)
5. 각 댐의 빈도별 월간 유입량
6. 월별,용도별 용수공급계획(유지용수 포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별표>

수계별 협의회 설치자

수 계 별			설 치 자	비 고
한		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
낙	동	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금		강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
섬	진	강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
영	산	강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
안	성	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삽	교	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만	경	강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
동	진	강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
탐	진	강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
태	화	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형	산	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